

기안용지

보도	필요	·	필요
방법	간접	·	직접 회견(설명)
과장	국장		
전결사항	국장		전결사항

분류기호 문서번호 치수02101-54

(전화번호 362-3819)

처리기간 85.6

시행일자 85.6

보급연한

보조기관 상하수국장 전결
 치수과장
 용지계장

시 장
 1985.6.11
 상하수국장

기안책임자 박기원

85.6 정종기

경유 수신 참조

발행 통제
 공고제 85.6.11
 1985.6.11

제목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 1안)

수신 내부결재

1.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 및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림으로서 시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사항 ;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등 징수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나. 예고기간 ; 1985.6. - 1985.6. (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관에 시보 게재 의뢰

시청 및 각 구청 게시판 게시

첨부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제2안)

수신 공보관

제목 동건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별첨의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등 징수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등 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제3안)
수신 법무담당관
제목 동건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보관에게 별첨 의 입법예고안을 시보에 게재 의뢰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등 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제 4안)
수신 : 각 구청장
참조 건설관리과장
제목 동 건
1.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등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조례 개정 주요 내용 및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각 구청 게시판에 게시토록 지시하니 별첨의 입법 예고 문을 게시하여 시정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 하도록 할것.
첨부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824 5611 168
건설 申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등 징수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자치사무위원회} 각처 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85. 6.

서울특별시 장

-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등 징수조례 개정안
- 2.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취지

가. 공유수면 점용료등 징수조례와 형태가 동일한 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가 개정 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등의 징수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

나. 점용료등 산정 방법 (제3조)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 면적 단위가 1(평)미만 ^은 1(평)으로 한 현행 규정을 0.5㎡ 이상 ^은 1㎡로, 0.5㎡ 미만은 계산 아니하도록 개정 하려는 것임.

다. 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

공용 공익 목적으로 한 비영리 사업과 재해로 인한 감면 규정은 있으나 감면 대상에 따른 감면율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행 규정을 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별 감면율을 규정 하려는 것임.

타.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

점용료등은 일시에 전액을 선납하여야 하는 현행 규정을 회계년도 별로 구분 징수하되 허가 년도분은 허가시, 그이후 년도분은 당해 년도 3월 이내 징수토록 개정하려는 것임.

마. 증감 징수의 규정의 폐지

교통의 편부 기타 사정에 의하여 2배 또는 2분의 1 범위내에서 증감 징수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 (제22조 단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5년 6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 장 (참조 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주소, 성명 (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4. 기타

점용료 산정기준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치수과 (362-3817, 362-38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